

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(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)



구 미 시

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(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“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”의 일환으로 구축된 사업화 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책사업을 수주하고, 선도기업 창출,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사용료 감면

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연구센터 1~2층
- 사용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사용(감면)기간 : '26. 1. 1. ~ '30. 12. 31.(5년)
- 사용(감면)면적 : 2,263㎡(1층 1,133㎡, 2층 1,130㎡)
- 감면금액 : 282,814,750원[56,562,950원 x 5년]

구 분	연간 사용료 산출내역	연 사용료
대 부 료	재산가격 2,262,518,000원 x 2.5%	56,562,950원

3. 근거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, 제17조(사용료 감면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나. 위치도

(참고)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개요

- 목 적 :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
소재부품, 플랫폼 및 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통한 창조적
산업 생태계 구축
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- 규 모 : 연면적 4,167m², 지상 4층
- 사업기간 : '16. 10. 1 ~ '20. 12. 31 (51개월)
- 사 업 비 : 168.2억(국 75, 도 32.8, 시 60.2, 민자 0.2)
(※ 센터건립 46, 장비구축 100, 운영 22.2)
-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 -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(IT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)으로 추진 : '13.03.
 - 과기부·경북도·구미시 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: '16.10.
* 구미전자정보기술원 : 센터 구축 주관기관 선정
 - 상용화지원센터 착공 및 준공 : '17.8 ~'18.4
 - 센터 개소, 장비구축 및 구축 장비를 활용한
기술지원 및 공동 R&D 추진 : '18.10.
 -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거점화, 선도기업 창출,
구축 장비 활용 국책사업 수주 : 2020.~

《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센터 구축 이후 후속사업목록 》

- ▶ 스마트 이송·물류 자율주행로봇(AMR) 플랫폼 구축(2023.4.~2025.12.)
 - 사업비 : 122.93억원(국 81.42, 도 6.3, 시 7.35, 기타 27.86)
 - 사업내용 : AMR 핵심부품·모듈 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, 시제품 개발 지원, 애로기술지원 등
- ▶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(2023.6.~2024.7.)
 - 사업비 : 40억원(국 20, 도 6, 시 14)
 - 사업내용 : 전력반도체 수출입 운송 실시간 추적 시스템 실증기술 개발, 휴먼증강 웨어러블 슈트 기반 근력사용 절감효과 실증기술 개발 등
- ▶ 경북형 물류이송 시로봇 플래그쉽 거점 구축사업(2025.6.~2025.12.)
 - 사업비 : 21.41억원(국 9.5, 도 2.85, 시 6.65, 민자 2.41)
 - 사업내용 : 지역 로봇기업의 반도체 산업 진출 촉진 지원 프로그램 운영, 기술지도 및 반도체 제조 공정 내 이송로봇 테스트 환경 구축 등
- ▶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구축사업 (2025.4.~2027.12.)
 - 사업비 : 84억원(국 42, 도 1,26, 시 2,94, 민자 37.8)
 - 사업내용 : 사업총괄, 반월 등 6개 산단 안전솔루션 구축, 구미산단 전기화재 및 화재감지 안전솔루션 구축 등
- ▶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사업(2025.7.~2029.12.)
 - 사업비 : 128.12억원(국 78, 도 4.68, 시 10.92, 민자 34.52)
 - 사업내용 : 우주급 전장부품 부품 생산을 위한 생산 라인 고도화 기술개발 부품 이송을 위한 이송 로봇 및 제품 설계 검증 AI 모델 개발

○ 기대효과

- 중소기업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·제품화부터 시험·검증, 통신망 연동테스트를 통해 5G 웨어러블 혁신제품·서비스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시장 선점
- 본 구축장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

위치도



관계법령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~3. 생략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①~② 생략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0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~④ 생략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신산업정책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응 건 (신 주 선)
	팀 장	정 세 황 (이 은 아)
	담 당 자	손 정 원 (480-5072) (최 지 연) (480-6173)